

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,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  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. 신청기술 현황

가. 구 분 :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

나. 기술명 : 슬라이딩 게이트와 가이드판을 이용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분리 제거 기술

다. 신청인 : 산양환경산업(주)(111511-0024186), (주)오곡산업(194311-0007476),  
홍남개발(주)(220111-0049809)

라. 주 소 :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03-45 2층, 경남 함안군 칠천읍  
오곡로 401-1,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남4길 105

마.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(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)

- 슬라이딩 게이트와 가이드판을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(RSB-2)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이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 제거하는 기술

바. 신청된 신기술범위

- 슬라이딩 게이트, 가이드판과 챔버를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에 포함되어있는 유기이물질을 분리 제거하는 기술

2.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: 2026.02.12.~2026.03.14. (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)

※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「신기술인증·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(02-2284-16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 : 이해관계인 의견서(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)